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3월 19일
- 회부일 : 2007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며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3**주요내용**

- 조례제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 (안 제1조, 제5조, 제13조)
- 기금 운용 심의사항 추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 (안 제7조제1항제3호)
-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위촉토록 함(안 제7조제3항,4항)
- 위촉위원에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안 제8조)
-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 (안 제10조제1호)

4**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2.9 ~ 2007.2.28, 19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그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을 근거로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및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용도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 주요내용 등입니다.
- 다만, 수정의견은
제명은 특별히 개정할 이유가 없어 현행과 같이 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6조 기금은 수해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장비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용도로 사용 및 수해발생 지역내 응급복구 사업 등 재난예방과 복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만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재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 보통세의 1천분의 2.5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 보통세의 100분의 1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
하여 영등포구세 보통세의 1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서 위임한
“특별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으로 한정되어 즉,
“우리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의 범위 안에서 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예방”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거의 모든 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용도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협의로 해석할 경우 법령
의 기금용도가 “시설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
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등으로 그 사업이
한정되고 “정비”, “보수”의 의미가 기존의 시설·장비 등이 제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로 재난의 예방사업은 협의로 해석하여
야 할 것 이므로

안 제6조제7호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의 전단 부분
은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와 조례 제6조제1호인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중복되고

안 제6조제8호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의 전단 부
분은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와 조례 제6조제1호인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중복되며

조례 제6조제7호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사업”은

전단 부분은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와 조례 제6조제1호인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중복되고

후단 부분은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조례 제6조제1호인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중복되며

법령, 시행규칙, 우리구 조례의 기존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고 조례 제6조제7호는 삭제의견이며

그 외 부분인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은 과도하고 광범위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그 지원이 시설인지, 물품인지, 인명피해인지 모호하여 두 문안을 통합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으로 하여 장비, 물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우리구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려는 주택침수에 의한 침수, 반파, 전파 등 지원 등의 지원은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의 “재해구호기금계정”과 “국비”, “의연금”, “복권기금” 등에서 요구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2006년도 양평동 침수 피해 때에도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의 “재해구호기금계정” 등에서 11억 2,800여 만원을 지원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탄력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다 보면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용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용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근거법,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재원이 다르므로 우리구 일반회계와 기금 및 서울시 기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9호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위원수당, 프랑카드 제작, 회의물품 등 심의위원회의 신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도 판단되며

안 제7조제1항제2호는 2001년 1월 9일 제정된 우리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 제11조에 입법례가 있으며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이전에 규정되었고 다른 호와도 중복되어 삭제 의견이며

제7조제2항은 위원 수가 15명으로 이는 다른 기금의 위원수 보다 비교적 많고 우리구 각 기금을 통할하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11명이며 현재 개정안에 관련공무원인 당연직이 6명이며, 기금관련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도 역산하면 최소한 11명이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3항은 심의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행정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치수방재과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4항은 심의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치수과장”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항제2호는 법령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수정하고

안 제7조의2제1항, 2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하여 제7조제5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8조제4항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자부 예규(제208호)에 규정되고 상이하야 후단 규정은 삭제 의견이며

안 제10제1호는 의안 심의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안 제11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운용의 계획의 입법례는
2001년 1월 제정된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와
2001년 9월 제정된 “우리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2001년 11월 제정된 “우리구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규정되고
2004년 3월 제정된 “우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 일부 조정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1제1항 본문과 제2항 및 제3항은 일부 내용이 우리구 “재정운영조례” 제20조에 입법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의견이며
제11제2항은 제7조와 중복되어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 붙 임 : 1. 수정의견대비표
2. 관련법령
3. 서울시, 구의 재난관리기금 비교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 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심의회</u> "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말한다. 2. " <u>구금고</u> "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u>위원회</u> "----- ----- "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u> "----- -----. 2.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u> 」----- -----.	제2조(정의)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구청장은 <u>기금사무</u> 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 ----- ----- -----. ② ----- <u>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u> ----- -----.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 6. (생략)</p> <p>7.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p> <p>8.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p> <p>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p>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7. <삭제> (현행 7호를 삭제)</p> <p>8.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p> <p>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p>
<p>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p> <p>1.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p> <p>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된다.</p> <p>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영등포구 소속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p> <p>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p> <p>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위원회 ----- -----.</p> <p>③-----행정국장 ----- 자치행정과장 -----.</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p> <p>2. 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 자</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p> <p>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4. (개정안 5호와 같음)</p> <p>② 위원회 ----- -----11인 이내-----.</p> <p>③----- 건설교통국장 ----- 치수방재과장 -----.</p> <p>④ -----.</p> <p>1.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p> <p>2.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p>

<p>⑤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 위원회 -----위원 회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7조의2(위원의 임기) ①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 안제7조제5항으로 신설 〈삭 제〉</p>
<p>제8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p>	<p>제8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회의 및 수당)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② (생 략)</p>	<p>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 ----- ----- 재난관리담당주사 ----- -----.</p>	<p>제9조(간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u>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u></p> <p>2. 기금출납원 - <u>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u></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 ----- -----.</p> <p>1. 기금운용관 - <u>자치행정과장</u></p> <p>2. 기금운용관 - <u>재난관리담당주사</u></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 ----- -----.</p> <p>1. 기금운용관 - <u>치수방재과장</u></p> <p>2.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 ----- -----40일 전까지 ----- ----- 수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삭 제> (현 행)</p> <p>③ -----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수입·세출결산서와 함께 -----.</p>
<p>제13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u>에 의한다.</p> <p>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u>에 의한다.</p>	<p>제13조(준용) 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p> <p>②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p>	<p>제13조(준용)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4·3·16>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2005. 8. 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호우)·폭풍·해일(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 재해구호법

-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2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재해구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5월말일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구호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
3. 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 다.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 라. 세입자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12조(재해구호기금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01.05)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5.01.05)

제5조 (용도) ①삭제(2005.01.05)

②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③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5.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6. 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본항개정 2005.1.5)
7.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사업 (본항신설 2007.02.)
5.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본항신설 2005.02.)

〈서울시, 구의 재난관리기금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계정	재해구호기금계정	재난관리기금계정	재난관리기금
재원 (법)	<p>재해구호법 제14조</p> <p>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세 보통세의 1천분의 2.5) 기타 국비, 의연금, 복권기금)</p>	<p>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p> <p>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세 보통세의 100분의 1)</p>	<p>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영등포구세 보통세의 100분의 1)</p>
	<p>제11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 3. 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p>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p>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용도 (시행령)			

	<p>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라. 세입자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p>	
<p>용도 (시행 규칙)</p>		<p>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p>
<p>용도 (조례)</p>	<p>제5조(용도) ①삭제 ②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③ (생략)</p>	<p>제5조(용도) ①삭제 ② (생략) ③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5.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6. 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본항개정 2005.01.05) 7.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등의 사업(본항신설 2007. 02) 8.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본항 신설 2007.02)</p>